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2020. 3.

KDB캐피탈

확 인 서

본인은 당사의 대표이사로서 본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 보고서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확인·검토한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실되고 충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3월 6일

산은캐피탈주식회사

대표이사 전 영 삼 (서명)

목 차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1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1

나. 지배구조 현황 2

1) 조직도 2

2) 지배구조의 특징 2

3) 지배구조 현황(요약) 3

다. 관련 규정 4

2. 이사회 4

가. 역할(권한과 책임) 4

1) 총괄 4

2) 구체적 역할 4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4

나) 정관 변경 5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5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6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6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7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7

나. 구성(이사) 8

1) 총괄 8

2) 구성원 9

다. 활동내역 10

1) 활동내역 개요 10

2) 회의 개최내역 10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 평가 16

1) 이사회 평가 16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17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의사회 의장 선임 사유 17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18
가. 역할(권한과 책임) 18
1) 총괄 18
2) 구체적 역할 18
나. 구성(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9
1) 총괄 19
2) 구성원 19
다. 선임기준 19
1) 후보 자격요건 19
2) 후보 추천 절차 20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21
라. 활동내역 및 평가 21
1) 활동내역 개요 21
2) 회의 개최내역 21
3) 평가 23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23
1) 대표이사 후보 23
가) 후보자 인적사항 23
나) 후보 제안자 23
다) 후보자 추천 사유 24
라) 자격충족 여부 24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5
2)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25
가) 후보자 인적사항 25
나) 후보 제안자 26
다) 후보자 추천 사유 26
라) 자격충족 여부 26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27
3) 사외이사 후보 27
가)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7
나)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28

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28
라) 임원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29
마)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29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30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30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30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30
가) 사외이사 김세진 30
나) 사외이사 조문기 30
다) 사외이사 김정학 30
라) 요약 31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31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32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32
1) 사외이사 김세진 32
2) 사외이사 조문기 33
3) 사외이사 김정학 34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35
바. 사외이사 평가 35
1) 평가 개요 35
2) 내부평가 35
가) 내부평가 개요 35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36
3) 외부평가 36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 내역 36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36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37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37

1) 사외이사 김세진 37
2) 사외이사 조문기 38
3) 사외이사 김정학 39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39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39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40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40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42
1) 일반 42
2) 비상계획 43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43
1) 소극적 요건 43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44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44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44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45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45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45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45
3) 후보군 현황 45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46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46

6. 감사위원회 47
가. 역할(권한과 책임) 47
1) 총괄 47
2) 구체적 역할 47
가) 이사회 및 이사의 업무집행 감독 47

나)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48
다)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 48
라) 검사실장 관련 사항 49
마) 재무제표 검토 등 49
바) 기타 49
나. 구성(감사위원회위원) 50
1) 총괄 50
2) 구성원 50
다. 활동내역 및 평가 50
1) 활동내역 개요 50
2) 회의 개최내역 51
3) 평가 54
라. 감사보조조직 등 55

7. 리스크관리위원회 56
가. 역할(권한과 책임) 56
1) 총괄 56
2) 구체적 역할 56
가)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56
나)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결정 56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56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57
마) 기타 57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57
1) 총괄 57
2) 구성원 58
다. 활동내역 및 평가 57
1) 활동내역 개요 57
2) 회의 개최내역 58
3) 평가 60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60

제 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61
1. 보수위원회 61
가. 총괄 61
나. 구성 61
1) 총괄 61
2) 구성원 62
다. 권한과 책임 62
1) 총괄 62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62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63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63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63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63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63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63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64
10) 기타 64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64
1) 의사결정 절차 64
2) 활동내역 개요 65
3) 회의 개최내역 65
4) 평가 67

2. 보수체계 67
가. 주요사항 67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67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68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69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69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70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70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70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70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70
나. 보수 세부사항 70
1) 임직원 총보수 70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71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71
1) 보수의 구분(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71
2) 성과보수의 형태(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72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2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3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73
6) 이연보수의 조정 74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74

<첨부규정> 75
1. 정관 75
2. 지배구조내부규범 91
3. 이사회 규정 100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104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106
6.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113
7.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115

제1절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1. 지배구조 일반

가. 지배구조 원칙과 정책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당사”)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의 지배구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지배구조 구현을 위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 집행을 이사회와 경영진에게 각각 별도로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2019년말 기준 이사회의 60%가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을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을 다양한 배경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특정 배경 및 직업군에 쏠리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 상호간의 전문성이 최대로 융합되도록 하여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과제와 도전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배구조 관련 일체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및 지배구조 관련 업무처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홈페이지(http://www.kdbc.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배구조 현황

1) 조직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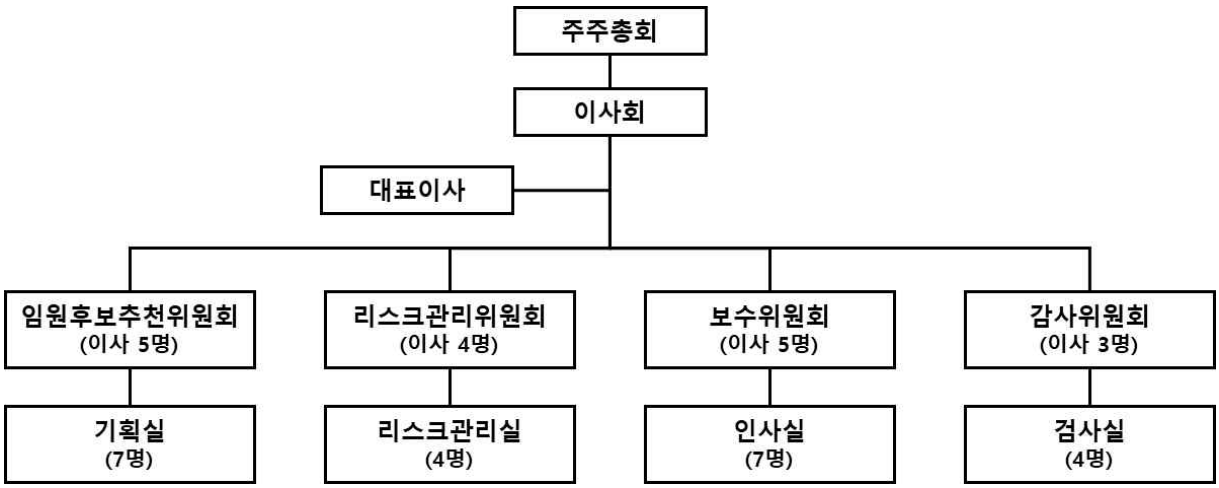

위원회	구성
이사회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리스크관리위원회	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보수위원회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3명

2) 지배구조의 특징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상설의사결정기구로서 상법 및 관련법규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2019년말 기준 이사회의 사외이사 수와 비율은 3명, 6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갖춘 자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효율성을 제고하고 독립성이 검증된 다수의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견제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등 4개의 이사회내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외이사, 대표이사(최고경영자),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 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 4명(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리스크 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등 리스크관리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 5명(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직원의 보상지급방식 심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지배구조 현황(요약)

(2019년 12월 31일 기준)

내부기관	주요 역할	구성 (사외이사수/ 구성원수)	의장	관련 규정
이사회	· 경영 전반의 최고의사결정	3/5	김영모 (대표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이사회규정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 임원(사외이사,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 임원 후보군 관리 및 후보 검증	3/5	김정학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회	· 내부감사업무 총괄 · 회사의 회계 및 업무 감사 · 외부감사인 선임	3/3	조문기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리스크관리 위원회	·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 비상계획 수립 및 위기대응 상황 점검	3/4	김세진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보수위원회	· 보수 및 지급방식에 관한 결정	3/5	조문기 (사외이사)	정관, 지배구조내부규범,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다. 관련 규정

- ㅇ 첨부1. 정관
- ㅇ 첨부2. 지배구조내부규범
- ㅇ 첨부3. 이사회규정
- ㅇ 첨부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 ㅇ 첨부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ㅇ 첨부6.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ㅇ 첨부7.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2. 이사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건전경영의 기반하에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경영진의 경영활동의 기준·절차·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를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서 합리적 경영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경영목표·전략의 수립 및 평가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목표·전략의 수립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구체적인 수립 및 평가에 필요한 실무업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그 내용을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관련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정관 제39조 제1항 제1호)

이에 따라 2020년 경영계획은 2019년 12월에 경영진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2019년 12월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2020년 사업계획(안)(예산(안) 포함)'을 승인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은 '투자 특화 역량 제고', '글로벌 진출 추진', '정책금융 기능 보완', '인재양성 및 문화창달', '지속성장 기반 확대'라는 5가지 중점추진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 정관 변경

당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정관 제39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2019년 2월 개최된 2019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내규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정관 일부 개정을 의결하였으며, 이어 2019년 3월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참고] 정관 개정 주요 내용

- 의안 : 2019년 제2차 이사회 제4호 안건('정관 변경(안) 승인')
- 개정배경
  - 자산규모 5조원 초과에 따라 지배구조법 전면 적용 등 반영한 지배구조 정비
- 주요 개정 내용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 사항 반영(정관 제16조의 2)
  - 이사의 자격요건 명시(정관 제32조)
  - 이사회 의장 선임사항(정관 제38조)
  -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및 재편 등(정관 제41조의2~3)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정관 제41조의5, 제46조의2)

다) 예산 및 결산 승인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예산을 승인하고, 주주총회에 부의할 결산안(배당 포함)을 심의 의결합니다.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정관 제39조 제1항 제3호)

예산(안)은 경영계획과 함께 의결하며 구체적 실무는 경영진에게 위임하고 이사회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의결합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예산은 2020년 경영계획과 함께 2019년 12월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고] 2020년도 예산 주요 내용
- 인건비 : 임금인상, 승진 등 반영
- 경 비 : IT컨설팅 등 지급수수료, 전산업무비 등 반영
- 자본예산 : 주전산기 신규 도입, 재무회계시스템 개발 등

결산과 관련해서도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2019년도 결산안은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개최된 이사회(2020년도 제2차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2019년도 결산안 주요 내용
- 당기순이익 : 별도기준 1,220억원, 연결기준 1,048억원
- 총자산 : 별도기준 57,575억원, 연결기준 58,848억원
- 배당 : 429억원 (배당성향 35%)

라)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

당사 이사회는 회사의 합병·분할·해산 및 영업양수도에 대해 심의 의결합니다.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정관 제39조 제1항 제4호)

이 뿐 아니라 본부신설·폐지 등 조직의 중대변경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나, 2019년 중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평가와 관련해서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정관 제39조 제1항 제5호)

내부회계관리규정,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등 내부통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사항이며, 내부통제의 평가는 감사위원회에서 심의

하고 감사위원회가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내위원회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사회를 대신하여 회사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측정·감시·통제할 수 있도록 리스크관리 전략을 수립하며, 총 리스크 한도를 심의 의결하여 해당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원칙・정책의 수립・평가

당사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정관 제39조 제1항 제6호)

당사는 2018년말 기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달성에 따라 2019년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전면 적용되었으며, 2019년 4월 개최된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규정, 지배구조내부규범, 각 이사회내위원회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의 제·개정을 승인하여 당사 규정이 법률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개최된 2019년 제9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승계 계획을 심의·의결함으로써,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 차기 최고경영자로의 경영 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 이해상충행위 관리・감독

당사 이사회는 대주주·임원과의 거래 등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주주·임원 또는 대주주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시 이를 심의·의결합니다. (관련규정 : 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7호, 정관 제39조 제1항 제7호)

이에 따라 2019년 당사 이사회는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 및 관계회사와의 거래 총 5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참고] 2019년도 관계회사 거래 승인 건

구분	안건명	내용
2019년 제1차	한국산업은행 온렌딩자금 차입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이사회		300억원 규모의 온렌딩대출을 차입하는 행위
	베트남 현지법인(VILC) 지급보증 한도 승인	해외현지법인인 VILC에 대하여 U$18백만 규모의 외화지급보증을 제공하는 행위
2019년 제5차 이사회	한국산업은행과의 파생상품거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140억원 규모의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가칭)HNT글로벌성장파트너십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출자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이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여 약 2,000억원 규모로 설립 예정인 PEF에 당사가 LP로 50억원을 출자(지분취득)하는 행위
2019년 제7차 이사회	한국산업은행과의 한도차입약정 기한연장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있는 3,200억원 규모의 한도대출의 기한을 1년 연장하는 행위

나. 구성(이사)

1) 총괄

당사 이사회는 2019년말 기준 총 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3인 이상 10인 이내로 운영(정관 제31조)되고 있으며, 이 중 3명이 사외이사입니다. 이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수는 3명 이상 두어야 하며, 이사 총수의 과반수이어야 한다는 지배구조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정관 제33조에 따라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시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총 재임기간을 6년 미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내이사의 임기를 단기로 설정할 경우 책임경영이 어렵고 단기수익을 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사외이사의 임기를 장기로 설정할 경우 사외이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사는 소극적 자격요건과 적극적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선임되고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자격요건으로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임원 및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8조)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으로는 사내이사의 경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경우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2019년말 기준 이사의 전문분야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금융분야 2명, 경제분야 1명, 경영분야 1명, 법률분야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당사의 이사회 의장은 김영모 대표이사로서, 2019년 4월 개최된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하여 금융분야 전문가인 김영모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였고, 2018년 10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인 김정학 사외이사가 선임 사외이사직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김영모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한 것은 다년간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경력을 바탕으로 경영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대표이사로서 효율적인 이사회 주재 및 이사 간의 원만한 의견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9년 12월 개최된 제11차 이사회에서 2018년 4월 이후 당사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임기개시일 : 2020.1.3.) 하여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지향하는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기준일 : 2019.12.31.)

성명	상임/사외	직위	경력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김영모	상임	대표이사, 이사회의장	한국산업은행 집행부행장	2018.05.11	2020.01.02. (사임일)	20개월	임추위, 보수위, 리스크위
조문기	사외	감사위원, 보수위위원장, 감사위위원장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2018.04.27	2020.04.26	21개월	임추위, 보수위, 리스크위, 감사위
김세진	사외	감사위원, 리스크위위원장	한국자산평가 대표이사	2018.04.27	2020.04.26	21개월	임추위, 보수위, 리스크위, 감사위

김정학	사외	감사위원, 선임사외이사, 임추위위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8.10.26	2020.10.25	15개월	임추위, 보수위, 리스크위, 감사위
박전규	상임	사내이사	한국증권금융 영업본부장	2018.05.02	2021.05.01	20개월	임추위, 보수위

※ 감사위 : 감사위원회, 임추위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리스크위 :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 : 보수위원회

다. 활동내역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에는 총 11회의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37개의 안건이 결의되었으며, 높은 참석률(참석률 100%)로 활발한 이사회 소집 및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이사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사회 개최시 해당 부서장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사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다양한 전문적 배경을 지닌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충실한 토의와 토론을 거쳐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도 제1차 이사회 : 2019년 1월 30일(수)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월 2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비등기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한국산업은행 온렌딩자금 차입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 베트남 현지법인(VILC) 지급보증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제2차 이사회 :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제2호 :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결과 보고	-	-	-	-	-	-
	제3호 : 2018년 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사항 보고	-	-	-	-	-	-
	제4호 : 2018년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업무수행 실적 보고	-	-	-	-	-	-
4. 의결안건							
	제1호 : 제48기(2018.1.1.~2018.12.31.) 재무제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제48기(2018.1.1.~2018.12.31.) 영업보고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2019년 이사보수한도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 정관 변경(안) 승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 제48기(2018.1.1.~2018.12.31.) 정기주주총회 소집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제48기(2018.1.1.~2018.12.31.) 연결재무제표 수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9년도 제4차 이사회 :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 보고	-	-	-	-	-	-
	제2호 :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	-
	제3호 : 2018년 감사결과 등 보고	-	-	-	-	-	-
	제4호 : 부실 PF 대출채권(상도동 사업장)의 효율적 회수 방안	-	-	-	-	-	-
4. 의결안건							
	제1호 : 내규 제·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반대[주]	가결
	제3호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 임원 직무대행 지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지배구조법 취지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의사 표명

마) 2019년도 제5차 이사회 :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6월 20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제2호 : 2019년 1분기 회계결산 보고	-	-	-	-	-	-
	제3호 : 경영현황 점검결과 보고	-	-	-	-	-	-
	제4호 : 특별감사 보고 등의 건	-	-	-	-	-	-
4. 의결안건							
	제1호 : 한국산업은행과의 파생상품거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가칭)HNT글로벌성장파트너십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대한 출자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이사회 등의 평가 방법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바) 2019년도 제6차 이사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8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2019년 반기 회계결산 보고	-	-	-	-	-	-
4. 의결안건		결의안건 없음					

사) 2019년도 제7차 이사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9월 2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한국산업은행과의 한도차입약정 기한연장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0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내규 개정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임시주주총회 소집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 주주명부 폐쇄 및 권리행사 기준일 설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규정 개정 시행일 및 주주총회 안건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대의사 표명

자)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1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4. 의결안건							
	제1호 :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수립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차) 2019년도 제10차 이사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4. 의결안건							
	제1호 : 대표이사 사장 선임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 신규 선임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후보자의 일부 업무집행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대의사 표명

카)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 : 2019년 12월 30일(월) 오후 4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26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	-	-	-	-	-
4. 의결안건							
	제1호 : 이사회 의장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2020년 사채발행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 규정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 비등기임원 선임	찬성	반대주1)	찬성	찬성	기권주2)	가결
	제6호 : 준법감시인 선임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임면	찬성	반대주3)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8호 : 직원 기본연봉 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9호 : 특별성과급 지급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1),주2),주3) *** 후보자의 일부 업무집행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반대 및 기권의사 표명

라. 이사회 및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1) 이사회 평가

이사회 평가는 법령과 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사회가 회사의 중요의사결정기관 및 경영진 견제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 이사회는 매년 초 전년도 이사회의 구성 및 활동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설문방식을 통해서 평가합니다. 평가는 개별이사 평가 및 직원평가(이사회 지원부서)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이사회 활동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이사회내위원회 평가의 경우 평가방법은 이사회 평가와 동일합니다.

(가) 평가방법
- · 5점 척도 설문 평가
- · 평가자
- - 이사회 평가 : 이사 전원, 이사회 주관부서
- - 이사회내위원회 평가 : 소속위원 전원, 이사회내위원회 주관부서

(나) 평가항목
- · 운영 및 구성의 적정성
- · 개최 빈도 및 개최 시간의 적정성
- ·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정성

2) 이사에 대한 직무평가 기준

이사회는 이사회나 위원회의 활동뿐만 아니라 각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설문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3조)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참석률)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 이사회 구성원간의 상호평가, 직원평가(이사회 지원부서) 로 구성됩니다. 평가항목은 '역량 및 전문성 보유 여부', '이사회(위원회)에 대한 참여도 및 사전준비도', '직무 공정성과 윤리책임성', '회사 발전기여도'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마.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 선임 사유

당사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개최된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김영모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영모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사유는 다년간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재직 경력 및 회사 업무 전반과 KDB금융그룹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현황을 이해시키고, 이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될 경우 지배구조법 제13조 제2항에 의해 사외이사 중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함에 따라 2019년 4월 개최된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김정학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진 견제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12월 개최된 제11차 이사회에서 2018년 4월 이후 당사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분야 전문가인 김세진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임기개시일 : 2020.1.3.)하여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지향하는 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회를 지원하여 대표이사(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내 위원회로 설치되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은 동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에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에 대한 전문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력,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겸비한 역량 있는 대표이사, 독립적이면서 당사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는 역량과 전문성, 식견 및 독립성을 갖춘 사외이사,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통할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풍부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포함한 총 5명의 위원으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최고경영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추천합니다.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후보군을 구성, 검증 및 관리하며 최종 후보자에 대한 자격요건 검증 및 추천 결의 등 단계별로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이사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2019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최고경영자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 관리하고, 후보에 대한 자격요건 심사 및 후보추천을 실시하여 최고경영자 및 감사위원회 위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 구성(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외이사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그 외 대표이사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중 사외이사 비율은 60.0%로 최고경영자,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본 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구성원 (기준일 : 2019.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외부	직위 등	선임일	임기만료일
김정학	사외이사	위원장	2019.04.25	2020.10.25
조문기	사외이사	위원	2019.04.25	2020.04.26
김세진	사외이사	위원	2019.04.25	2020.04.26
김영모	상임이사	위원	2019.04.25	2020.01.02
박전규	상임이사	위원	2019.04.25	2021.05.01

다. 선임기준

1) 후보 자격요건

당사 최고경영자 자격요건으로는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한 임원의 자격요건에 더불어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 보유
- 회사의 비전 공유
- 공익성 및 건전경영 추구

또한, 최고경영자 이외에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역시 지배구조내부규범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사내이사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함.
- 사외이사 :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6조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해야 함.

2) 후보 추천 절차

가) 최고경영자(대표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 회사 등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후보군 선정과 관리와 관련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사항을 차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결의로 하며, 해당 후보자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나)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감사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있으며, 후보자 선정과 관련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사항을 차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며, 해당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선정하고 관리하며 후보군 선정과 관리와 관련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의결사항을 차회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하며, 해당 후보자를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3) 임원 업무수행 평가 방식

사외이사의 경우 역량 및 전문성, 참여도 및 사전준비도,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회사발전 기여도, 이사회 참석률을 평가지표로 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라.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최고경영자 후보군 및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내역 승인,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해 총 3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5개였으며 결의안건은 5개, 보고안건은 없었습니다. 또한, 5개의 결의안건 중 5개가 가결되었습니다.

2019년말 기준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 9명과 사외이사 후보군 6명 등 총 15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존 대표이사 김영모의 사임에 따라 2019년 11월 19일 개최된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후보자 전영삼을 추천하였으며, 2019년 12월 10일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동일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기로 함에 따라 2019년 10월 23일 개최된 2019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정학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며, 2019년 12월 10일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도 제1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11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선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0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주)	가결

주) 본인 추천에 대한 안건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다) 2019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1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11월 13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김영모	박전규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찬성	반대주)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후보자의 일부 업무집행에 대한 이견이 있어 반대의사 표명

3) 평가

당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운영 및 구성의 적정성, 개최빈도 및 개최시간의 적정성,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 임원후보 추천 관련사항

1) 대표이사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전영삼
(2) 출생연도 : 1962년
(3) 출신학교
- 한성고등학교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 석사

(4) 경력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13.01.	2014.01.	한국산업은행 발행시장부장
2014.01.	2016.01.	한국산업은행 기획조정부장
2016.01.	2019.01.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집행부행장)
2019.02.	2020.01.	당사 부사장
2020.01.	현재	당사 대표이사

나) 후보 제안자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로 제안하였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약 30년간 재임하며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우수한 업무역량을 보유한 금융전문가로, 동행의 기획조정부장, 자본시장부문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당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기획·재무·리스크를 담당하는 주요업무책임자와 신용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여신금융업 동향 및 당사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경영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표이사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동 후보자는 당사의 추천으로 2019년 11월 19일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승인한 10명의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포함되었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가 : 후보자는 당사 최고경영자 후보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8조에 최고경영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토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2019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신상 관련 서류들과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후보자가 대내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본인은 당사 최고경영자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전영삼 후보자에 대한 최고경영자 추천을 위해 2019년 11월 19일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전영삼 후보자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라고 판단하여 최고경영자로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가) 후보자 인적사항

(1) 성명 : 김정학
(2) 출생연도 : 1953년
(3) 출신학교
- 경남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4) 경력

기간		주요 경력
From	To	
2004.02.	2006.02.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02.	2008.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02.	2010.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02.	2013.0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02.	2015.02.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02.	2018.01.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8.03.	현재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2018.10.	현재	당사 사외이사

나) 후보 제안자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로 제안하였습니다.

다) 후보자 추천 사유

(1) 후보제안자 추천이유

후보자 김정학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2018년 10월부터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당사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감사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2) 후보자 추천경로

동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하여 추천하였습니다.

라) 자격충족 여부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1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관련법령 2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후보자는 당사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제2항에 사외이사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지 여부를 체크토록 하고 있으며, 후보자는 동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3) 본인 소명

2019년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후보자는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위하여 자격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신상 관련 서류들과 전문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해당 후보자가 대내외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보자 본인은 당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소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검토 및 의결결과

김정학 후보자에 대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2019년 10월 23일 2019년 제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해당 후보의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하는 소극적 요건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학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등의 부장판사를 역임하는 등 법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주주총회에 추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3) 사외이사 후보

2019년중 사외이사 후보 추천 이력이 없습니다.

가) 사외이사 재임여부 및 평가결과

2019년도에 임기가 도래한 사외이사 및 연임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나) 자격요건 검토보고서

당사 지배구조법 전면 적용된 2019년 이후 재선임된 사외이사는 없습니다.

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현황

(1)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개요

당사는 주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후보군 중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자로 주주총회에 추천합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 내역

당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자 현재 관리중인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극적, 적극적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후보군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중 당사는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현재 재직중인 사외이사 3명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외이사인력뱅크를 통해 외부인원 3명 등 총 6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으며, 동 후보를 2019년 11월 19일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 후보군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제 1명, 경영 1명, 법률 1명, 회계 1명, 공학 1명, 인문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1차 결의(심의)일자 : 2019년 11월 19일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분야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경영	1	16.7%	
경제	1	16.7%	
회계	1	16.7%	
법률	1	16.7%	
공학	1	16.7%	

인문	1	16.7%	
합계	6	1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주주	-	-	
외부자문기관	3	50.0%	
사외이사	-	-	
지원부서	3	50.0%	
합계	6	100%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군 추천관련 보고한 내용

보고일자 : 2019년 12월 10일 2019년 제10차 이사회
상기 '19년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사항 보고

마) 사외이사 지원부서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군 관리 업무 관련 주기적으로 보고한 내용

(1) 사외이사 지원부서 설치현황

사외이사 지원부서는 주주, 회사 등 추천으로 사외이사 후보가 추천되면 후보자에 대한 자격 검증을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 후보자의 자격 검증 등 지원부서의 업무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 운영현황>

부서명 : 기획관리본부 기획실
직원수 : 총 7명 (실장 1명, 팀장 2명, 팀원 4명)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업무 보고 및 지원내용

일자	보고 및 지원내용
2019.11.01. ~ 2019.11.13.	2019년도 사외이사 후보군 탐색
2019.11.19.	2019년도 사외이사 후보군 보고

4. 사외이사 활동.보수 등

가. 사외이사 활동내역

1)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회의일시, 안건내용

사외이사 활동내역은 본 연차보고서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회 : 본 연차보고서의 2.이사회-다.활동내역
- 이사회내위원회
  • 임원후보추천위원회 : 본 연차보고서의 3.임원후보추천위원회-라.활동내역 및 평가
  • 감사위원회 : 본 연차보고서의 6.감사위원회-다.활동내역 및 평가
  • 리스크관리위원회 : 본 연차보고서의 7.위험관리위원회-다.활동내역 및 평가
  • 보수위원회 :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의 1.보수위원회-라.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2) 사외이사 개인별 이사회내 위원회 참석 및 찬성여부

가) 사외이사 김세진

사외이사 김세진은 20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감사위원회 7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5회 모두에 참석하였으며,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4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나) 사외이사 조문기

사외이사 조문기는 20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감사위원회 7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5회 모두에 참석하였으며,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43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다) 사외이사 김정학

사외이사 김정학은 2019년 중 개최된 이사회 11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 3회, 감사

위원회 1회, 리스크관리위원회 5회, 보수위원회 5회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회사의 이사로서 안건검토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2019년 중 총 40시간을 사용하였습니다.

라) 요약

구분 / 사외이사명	이사회			이사회내위원회												활동시간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보수위원회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개최	참여	찬성	
김세진	11	11	37	3	3	5	7	7	16	5	5	3	5	5	6	43h
조문기	11	11	37	3	3	5	7	7	16	5	5	3	5	5	6	43h
김정학주)	11	11	35	3	3	5	7	1	1	5	5	3	5	5	6	40h

주) 사외이사 김정학은 2019년 12월 10일자로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2019년 제7차 감사위원회(2019.12.31.)부터 참여함.

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으며, 보험계약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가입대상자 : 등기임원(사외이사 포함)
(2) 보험가입조건
- 보상한도 : 30억원
- 보험기간 : 2019년 07월 ~ 2020년 07월
- 가 입 사 : 메리츠화재
- 주요 배상범위
 · 경영배상책임
 · 피보험회사의 유가증권관련 손해배상청구
- 주요 면책·부담보조항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정부기관 배상청구
 · 손해배상청구 중 (ⅰ) 의도적 또는 실제적으로 피보험자가 이익·편의를 불법으로 얻은 사실에 기인된 것이거나 (ⅱ) 부정·사기·범죄행위를 의도적으로 하거나, 묵과하거나, 남을 설득시켜 하도록 한 행위에 기인된 경우
 · 전문 서비스의 이행, 불이행, 그와 관련된 행위, 과오 또는 태만(부작위)과 관

련되어 제기되는 손해배상청구
· 회사 임원 또는 회사가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전문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나 오류 및 탈루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하여 제기된 배상청구
· 특허권/저작권 관련손해
· 신체상해 및 재물의 손해
· 전쟁/테러행위 관련
· 보험계약 이전 손해배상청구 및 사고정황
· 오염물질 및 원자력 관련 손해
· 피보험자참여 손해배상청구

다. 사외이사 교육·연수

2019년 중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라. 사외이사 자격요건 유지 여부

사외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외이사의 소극적 요건과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에서 정하는 적극적 자격요건 일체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외이사 김세진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1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관련법령 2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김세진 사외이사는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세진 사외이사는 2000년 설립된 한국자산평가㈜(舊 한국채권평가)의 설립자 중 한 명으로, 동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금융시장 및 금융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한국자산평가㈜ 펀드평가사업부에서 독립·분사한 한국펀드평가㈜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100개 이상의 연기금 및 금융기관을 대

상으로 펀드 및 연기금 위탁평가·성과평가 등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어 금융산업 전반에 대한 식견이 탁월합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사외이사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로 재직

2) 사외이사 조문기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1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관련법령 2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조문기 사외이사는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조문기 사외이사는 한국은행에서 33년간 재직하며 런던사무소 근무 및 외환시장 팀장 등을 맡았으며, 국외 업무 전문성을 높게 인정받아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상임 고문을 2년간 역임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어음 소프트웨어 관리 업무를 제공하는 민간기업 스타뱅크의 대표이사를 3년간 역임하며 전자 금융업무 등 핀테크와 같은 신사업에도 식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사외이사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골드만삭스 상임고문, 스타뱅크 대표이사역임

3) 사외이사 김정학

가) 소극적 자격요건

- 관련법령 1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관련법령 2 : 지배구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평가 : 김정학 사외이사는 당사 사외이사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나) 적극적 자격요건

김정학 사외이사는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서부·북부·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29년간 근무하였으며, 대법원 연구법관의 경험도 있는 등 사법 전반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에이스의 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었습니다.

다) 요약

심사항목	충족여부	충족 이유
1. 소극적 자격요건		
가. 임원자격요건 (지배구조법 제5조, 시행령 제7조)	충족	결격사유 없음
나. 사외이사자격요건	충족	결격사유 없음

	(지배구조법 제6조, 시행령 제8조)		
2. 적극적 자격요건			
	가. 전문성		서울지법 중앙판사,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마. 기부금등 지원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 사외이사 평가

1) 평가 개요

당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외이사 평가방법에 의거, 1년간의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익년 초 설문방식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역량, 전문성, 참여도 등에 대해 자기평가, 구성원평가, 직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항목 총점 대비 평가점수 득점률을 바탕으로 평가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내부평가

가) 내부평가 개요

① **평가 주체** : 사외이사의 연간활동에 대한 내부평가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지배구조연차보고서 공시 전까지 이사회 지원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합니다.

② **평가 기준** : 평가는 계량적인 평가(참석률)와 정성적인 평가를 병행하며, 정성평가는 자기평가, 이사회 구성원간의 상호평가, 직원평가(이사회 지원부서) 로 구성됩니다. 평가항목은 '역량 및 전문성 보유 여부', '이사회(위원회)에 대한 참여도 및 사전준비도', '직무공정성과 윤리책임성', '회사 발전기여도'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③ **평가 절차** : 이사회의사록 등에 대한 서면조사와 자기평가(사외이사 본인), 구성원평가(본인을 제외한 이사 전원), 직원평가(이사회 지원부서) 등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를 수행하며, 항목별 평가 비중에 따라 평가결과를 산정합니다.

나) 내부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1) 총론

2019년 당사 사외이사 활동 실적 등에 대한 내부평가는 이사회 지원부서인 기획실의 주관하에 실시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사외이사 전원이 역량 및 전문성, 참여도 및 사전준비도, 직무공정성 및 윤리책임성, 회사 발전 기여도 및 이사회(위원회) 참석률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사외이사별 평가결과

구 분	평가 항목					종합
	역량 및 전문성	참여도 및 사전준비도	직무공정성및 윤리책임성	회사발전 기여도	이사회(위원회) 참석률	
김세진	S	S	S	S	S	S
조문기	S	S	S	S	S	S
김정학	S	S	S	S	S	S

주)평가등급 : S등급(4.0이상~5.0이하) / A등급(3.0이상~4.0미만) / B등급(2.0이상~3.0미만) / C등급(1.0이상~2.0미만) / D등급(1.0미만)

3) 외부평가

당사는 사외이사에 대해 외부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 선임사외이사 및 지원부서 활동내역

1) 선임사외이사 활동내역

당사는 2019년 4월 개최된 2019년도 제4차 이사회에서 김정학 사외이사를 선임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정학 사외이사는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사외이사들의 의견교류를 확대하는 등 선임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사외이사진의 건의, 요청사항을 회사에 전달하고, 필요한 자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였습니다.

사외이사 지원부서인 기획실은 선임사외이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선임사외이사의 독립적 권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 사외이사 지원부서의 활동내역

당사의 사외이사 지원부서인 기획관리본부 기획실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개최, 이사회 운영관련 내규의 정비 등의 이사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회내위원회 설치, 이사회 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선임, 내부규정 내 지배구조법 내용 반영 및 사외이사 평가 등을 실시함으로서 지배구조 체계 확립 및 지배구조법 충실 이행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 및 이사회내위원회 활동 간 사외이사의 자료 요청에 적극 대응하고, 회의의 주관 및 사전 안건 설명, 기타 사외이사의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아. 사외이사 재직기간 및 보수

1) 사외이사 김세진

가) 재직기간

김세진 사외이사는 2018년 4월 27일자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2019년 12월말까지 약 21개월간 재직중에 있습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325만원	
	기본금	4,875만원	
	상여금	-	

	거마비	450만원	- 이사회참석 : 30만원×10회 - 감사위원회참석 : 30만원×3회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참석 : 30만원 ×2회(동일자 개최시 1회로 계산)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	-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회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2) 사외이사 조문기

가) 재직기간

조문기 사외이사는 2018년 4월 27일자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2019년 12월말까지 약 21개월간 재직중에 있습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325만원	
	기본금	4,875만원	
	상여금	-	
	거마비	450만원	- 이사회참석 : 30만원×10회 - 감사위원회참석 : 30만원×3회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참석 : 30만원 ×2회(동일자 개최시 1회로 계산)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회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

3) 사외이사 김정학

가) 재직기간

김정학 사외이사는 2018년 10월 26일자 당사의 사외이사로 최초 선임되어 2019년 12월말까지 약 15개월간 재직중에 있습니다.

나) 보수 및 보수 외에 지급된 편익 제공 현황

항목		금액	산출내역
가. 보수총액		5,235만원	
	기본금	4,875만원	
	상여금	-	
	거마비	360만원	- 이사회참석 : 30만원×11회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참석 : 30만원 ×1회(동일자 개최시 1회로 계산)
나. 보수 외의 기타 편익			
	업무활동비	-	-
	건강검진 지원	1회	종합검진 1회
	차량제공	-	-
	사무실제공	-	-
	기타 편익제공	-	

자. 금융회사와 사외이사등이 소속한 기관과의 계약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차. 최근 5년간 사외이사 선임 내역

성명	최초 선임일	임기 만료일	재임 기간	담당 위원회	직위	경력
송정환	2014.06.26	2016.06.25	24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14.10~`16.06)	-	한국산업은행 여신심사2부장
손재필	2014.12.10	2017.12.09	36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14.12~`17.12)	선임사외이사 (`16.07~`17.06)	제이제이사회복지재단 이사장
김종두	2015.04.30	2017.04.29	24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16.04~`17.04)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종신	2016.06.26	2018.06.25	24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 (`16.10~`18.06)	선임사외이사 (`17.06~`18.06)	감사원장 직무대행

김세진	2018.04.27	2020.04.26	21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18.06~`19.04) 임추위(`19.04~) 보수위(`19.04~) 리스크위(`18.04~) 감사위(`18.04~)	리스크위 위원장(`18.07~)	한국자산평가 대표이사
조문기	2018.04.27	2020.04.26	21개월	사외이사후보추천위(`18.06~`19.04) 임추위(`19.04~) 보수위(`19.04~) 리스크위(`18.04~) 감사위(`18.04~)	선임사외이사(`18.06~`19.04) 보수위 위원장(`19.04~) 감사위 위원장(`18.07~)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김정학	2018.10.26	2020.10.25	15개월	임추위(`19.04~) 보수위(`19.04~) 리스크위(`18.10~) 감사위(`19.12~)	선임사외이사(`19.04~`19.12) 임추위 위원장(`19.04~)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5.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내부규정

당사는 2018년말 기준 자산 5조원 초과에 따른 지배구조법 전면 적용에 따라 금융회사의 장기 비전을 공유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2019년 4월 개최된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제정(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6조~31조)하였습니다.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은 최고경영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9년 11월 2019년 제9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최고경영자의 최소 자격요건, 경영승계 개시 절차,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입니다.

<붙임>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제1조(목적)
이 계획은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관련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계획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2. “경영승계”란 최고경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것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3. “비상상황”이란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으로 인하여 최고경영자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제정 및 변경)
① 이 계획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규를 준용한다.

제4조(자격)
①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5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개시)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등)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며,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자격요건의 부합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

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며, 사내,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참조 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확정된 경우, 이사회는 정관 등 관련 내규에 따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지원)
이사회 주관 부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8조(최고경영자 관련 비상계획 개시)
최고경영자의 유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며,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개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계획은 201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나.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및 경영승계 절차

1) 일반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8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제4조에 의하면 최고경영자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요건으로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 지배구조내부규범 제 29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제6조에 의거하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내,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참조하여 최초경영자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고경영자 후보자가 관련 법령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최고경영자 임기만료 등으로 경영승계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신속하게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며, 경영승계 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선임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2) 비상계획

당사는 최고경영자가 사고 또는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6조 및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 제8조에 의거, 2019년 4월 제4차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경영승계 개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언급된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경영승계를 실시합니다.

가) 대표이사 사장 직무 대행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합니다. 단, 동일 직위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선임일자가 앞서는 자의 순서로 하며, 최초 선임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의 순서로 합니다.

나) 이사회 의장 직무 대행

선임사외이사, 그 외 이사의 순으로 합니다. 단, 선임사외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참석한 이사 중 최초 선임일자가 앞서는 자의 순서로 하며, 최초 선임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의 순서로 합니다.

다) 주주총회 의장 직무 대행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합니다. 단, 동일 직위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선임일자가 앞서는 자의 순서로 하며, 최초 선임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의 순서로 합니다.

다. 최고경영자 자격충족 여부 및 근거

1) 소극적 요건

- **관련법령** : 지배구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평　　가** : 2019년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고경영자 최종후보자로 추천된 전영삼 부사장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2)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

- **자격요건 1**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6조 1항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

- **자격요건 2**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8조
·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

- **평　　가**
· 2019년 최고경영자 최종후보로 추천된 전영삼 부사장(2020년 3월 現 당사 대표이사)은 한국산업은행의 기획조정부장, 자본시장부문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여 금융업 전반에 대한 우수한 업무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9년 2월부터 당사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금융업 동향 및 당사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경영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경영승계 내역

1)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내역

김영모 대표이사의 임기가 2020년 중 만료되어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추천 및 승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제3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2019년 11월)에서 전영삼 부사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하였으며, 2019년 12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전영삼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그 직후 개최된 2019년 제10차 이사회에서 동 후보자를 최고경영자로 선임하였습니다.

2) 최고경영자 승계 관련 주요 심의·의결 경과

일자	운영현황	비고
2019.11.19.	최고경영자 후보자 결정	제3차 임추위
2019.12.10.	신임 사내이사 선임(전영삼)	임시주주총회
2019.12.10.	대표이사 사장 선임(전영삼)	제10차 이사회

마.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현황

1)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련 지침

당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에 따라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총괄하여 운영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해당 계획에 따라 후보군 선발, 후보군 자격검증, 최종후보자 선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여 최고경영자 경영승계절차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2) 후보군 관리 활동내역

당사는 2019년말 기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하여 총 9명의 후보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후보군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후보군 관리는 당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후보군 관리와 관련된 실무 지원은 이사회 지원부서인 기획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8년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을 초과함에 따라 2019년중 최초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을 설정하였으며 사내 추천 1명, 주주 추천 8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후보군 현황 (기준일 : 2019.12.31.)

구분		후보군 수	백분율	기타
내부		1	11.1%	
외부	금융회사	8	88.9%	
	비금융회사	-	-	
	공공기관	-	-	

	기타	-	-	
합계		9	100.0%	

추천경로	후보군 수	백분율	비고
최고경영자	1	11.1%	
이사회	-	-	
주주	8	88.9%	
외부기관	-	-	
기타	-	-	
합계	9	100.0%	

바. 이사회의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 적정성 점검 내역

당사는 2019년 4월 2019년 제4차 이사회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내용이 포함된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1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말에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20년중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사.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지정 및 운영 현황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27조에 따라 이사회 주관 부서에서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주관 부서는 기획관리본부 기획실이며 기획관리본부장을 포함하여 총 8명입니다. 기획실은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업무 외에도 경영기획 및 통할업무, 홍보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업무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기획관리본부 기획실 (총 7명)

6. 감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부통제제도의 주요 기구로서, 업무의 효율화, 재무제표의 신뢰도 제고, 금융관련 제반 리스크의 최소화, 회사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이사 및 경영진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 재무활동 등 감사업무 전반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현재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경영판단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가지며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회, 집행기관,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당사는 감사위원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가) 이사회 및 이사의 업무집행 감독

① 주주총회 제출의안에 대한 의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해당 의안 및 서류에 관한 법령 및 정관 위반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20일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 및 2019년 11월 19일 개최된 제6차 감사위원회에서 각각 제48기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부의안건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하였습니다.

②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업무집행에 대한 처리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9조 및 정관 제41조의5에 의거하여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등을 의결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나)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집행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9조에 의거하여 내부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의 감사계획은 2018년 12월 20일 개최된 제7차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감사업무는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검사실이 주관하고, 감사위원회의 보조조직인 검사실의 감사인이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실제 감사를 집행하는 검사실 역시 그 감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 외부감사인 선정 및 평가

당사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정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24일 개최된 제1차 감사위원회에서 2019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 3개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은 감사기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및 감사인 사후 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적정표시 여부 및 중요 위반사항 확인에 대한 소홀여부, 회계감사기준에 의거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감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상의 통제절차를 적절하게 감사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기재된 전반적인 내용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019년 3월 20일 개최된 제3차 감사위원회에서 제48기 결산에 대한 감사 결과를 승인 하였습니다.

라) 검사실장 관련 사항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감사실시/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 및 위원회 결의로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하여 검사실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검사실장은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 재무제표 검토 등

감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회 결의 후 이사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매 사업연도마다 보고받고, 이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 기타

감사위원회는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내부통제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평가보고서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 설계·운영의 적정성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연 1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감사위원회 위원)

1) 총괄

당사 감사위원회는 정관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말 기준 당사 감사위원회는 3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2) 구성원 (기준일 : 2019.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문기	사외	감사위원회 위원장	2018. 04. 27	2020. 04. 26
김세진	사외	감사위원	2018. 04. 27	2020. 04. 26
김정학	사외	감사위원	2019. 12. 10	2020. 10. 25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 총 7회의 감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감사위원의 평균 참석율은 95.2%로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운영되었습니다.

2019년 중 주요 활동으로는, 제4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결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감사계획에 따른 내부감사 결과 등에 관해 심의·결의하였으며, 의결안건 이외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보고받았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도 제1차 감사위원회 : 2019년 1월 24일(목) 오후 3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월 21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문기	김세진	박전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외부감사인 선정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제2차 감사위원회 : 2019년 2월 22일(금)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1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문기	김세진	박전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제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	-	-
4. 의결안건					
	제1호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에 대한 승인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도 제3차 감사위원회 : 2019년 3월 20일(수) 오전 10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15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문기	김세진	박전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제4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작성 및 이사회 제출에 대한 결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 결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3호 : 2018년 감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결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4호 : 내부통제규정 개정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5호 : 2018년도 자금세탁방지업무 감사결과 이사회 보고 결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6호 : 2018년도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결과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7호 : 2018년도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이사회 제출 심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라) 2019년도 제4차 감사위원회 : 2019년 5월 2일(수) 오후 5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4월 29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문기	김세진	박전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제1호 : PF부실채권 여신관련 법률자문 보고	-	-	-	-

	제2호 : 관리형토지신탁약정서 위반 등 미이행 내용	-	-	-	-
	제3호 : 투서내용 보고 및 구제방안 논의	-	-	-	-
4. 의결안건					
	제1호 :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	-	-	보류

마) 2019년도 제5차 감사위원회 : 2019년 10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10월 22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문기	김세진	박전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불참주)	-
3. 보고안건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감사위원회운영규정 개정 심의 및 이사회 안건 부의	찬성	찬성	-	가결
	제2호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개정	찬성	찬성	-	가결

주)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

바) 2019년도 제6차 감사위원회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1시 2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11월 14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문기	김세진	박전규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제1호 : 정기감사 결과 보고	-	-	-	-
	제2호 : 외부감사인 3분기 결산 검토 결과 보고	-	-	-	-

4. 의결안건					
	제1호 : 임시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 결의	찬성	찬성	반대주)	가결
	제2호 : 표준감사시간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외부감사인과의 계약조건 재승인 결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주) 관련 법률상 주주총회 결의방법 등에 대한 이론이 있어 반대 의사 표명

사) 2019년도 제7차 감사위원회 : 2019년 12월 30일(월) 오후 4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27일〕

항목		이사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이사 성명		조문기	김세진	김정학	-
2. 참석여부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					
	제1호 : 여신관리단 특별감사 결과 “최종감사보고서”보고	-	-	-	-
	제2호 : 금융감독원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결과 보고	-	-	-	-
4. 의결안건					
	제1호 : 2020년 내부감사계획 수립 승인 결의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감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감사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운영 및 구성의 적정성, 개최빈도 및 개

최시간의 적정성,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감사보조조직 등

당사는 감사위원회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실을 두고 있으며(감사위원회운영규정 제12조), 감사위원회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실제 감사를 실시하는 검사실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감사위원회직무규정 제7조)

검사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검사실장을 포함한 3명의 감사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사실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의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외부감사 지원과 같은 감사기획총괄 업무와, 전반적인 감사수행결과를 보고하는 감사업무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검사실은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감사기능의 전문성강화, 직원들의 규정준수 활동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정기감사 및 필요에 따라 특별감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지원부서 운영현황>
- 부서명 : 검사실
- 직원수 : 총 4명 (실장 1명, 검사역2명, 일반직원 1명)

2019년중 감사위원회에 보고한 주요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대 상	보고 및 지원내용
2019. 02. 22	감사위원회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019. 05. 02	감사위원회	- PF부실채권 여신관련 법률 자문 보고 - 관리형토지신탁약정서 위반 등 미이행 내용 - 투서내용 보고 및 구제방안 논의
2019. 11. 19	감사위원회	- 정기 감사 결과 보고 - 외부감사인 3분기 결산 검토 결과 보고
2019. 12. 30	감사위원회	- 여신관리단 특별감사 결과 “최종감사보고서” 보고 - 금융감독원 내부감사협의제도 점검 결과 보고

7. 리스크관리위원회

가. 역할(권한과 책임)

1) 총괄

당사는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리리스크, 유동성리스크, 시장리스크 및 기타리스크의 관리와 전체 리스크관리를 통할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체적 역할

가)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당사 리스크관리는 모든 영업활동에 대한 통제과정으로서, 건전한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견제와 균형”을 원칙으로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는 세부 리스크별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나)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 결정

리스크관리위원회는 회사가 부담할 수 있는 리스크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에 따라, 연간리스크한도(내부자본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신용, 금리, 운영, 시장리스크 등의 세부유형별로 배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환경의 변동성에 따른 환율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간 외환포지션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포트폴리오 구축 및 여신편중위험 방지를 위하여 여신 건별, 거래처별, 산업별 등 다각적인 여신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변경

리스크관리 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시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는 바, 독립적인 리스크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리스크관리현황보고를 통하여 회사의 리스크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설정된 리스크관리지표에 대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및 위기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리스크관리위원회위원)

1) 총괄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여, 사외이사 3명 및 대표이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구성원 (기준일 : 2019.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김세진	사외	위원장	2018.04.27	2020.04.26
조문기	사외	위원	2018.04.27	2020.04.26
김정학	사외	위원	2018.10.26	2020.10.25
김영모	상임	위원(대표이사)	2018.05.11	2020.01.02

다. 활동내역 및 평가

1) 활동내역 개요

2019년 중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총 5회 개최되었습니다.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은 총 7건이었으며 결의안건은 3건, 보고안건은 4건입니다. 결의안건은 총 3건 중 3건 모두 가결되었습니다.

2) 회의 개최내역

(가) 2019년도 제1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년 2월 28일(목) 오전 11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2월 26일(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세진	조문기	김정학	김영모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2018년 12월말 기준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	-	-	-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나) 2019년도 제2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년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6일(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세진	조문기	김정학	김영모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및 '리스크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리스크관리세칙' 개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도 제3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1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6월 21일(금)〕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세진	조문기	김정학	김영모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2019년 3월말 기준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	-	-	-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라) 2019년도 제4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1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8월 26일(월)〕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세진	조문기	김정학	김영모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제1호 : 2019년 6월말 기준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	-	-	-
4. 의결안건	의결안건 없음				

(마) 2019년도 제5차 리스크관리위원회 : 2019년 12월 30일(월) 오후 4시 2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26일(목)〕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김세진	조문기	김정학	김영모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
제1호 : 2019년 9월말 기준 리스크관리 현황 보고	-	-	-	-	-
4. 의결안건					
제1호 : 2020년 내부자본한도 설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3) 평가

당사는 리스크관리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전년도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구체적 평가항목에는 운영 및 구성의 적정성, 개최빈도 및 개최시간의 적정성,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정보제공의 적정성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는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 지원부서 운영현황>

부서명 : 리스크관리실
직원수 : 총4명 (실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8. 감독당국 권고사항 및 개선계획

2019년중 당사는 지배구조와 관련한 감독당국의 행정처분·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2절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1. 보수위원회

가. 총괄

당사는 보수체계가 회사의 성과와 이에 따른 리스크구조의 조화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로서의 영속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회사의 주요 보수정책을 상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관련 내부규정으로 보수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는 당사 정관 제41조의2 제1항 및 이사회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를 그 근거로 하여 2019년 4월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을 통하여 설치, 동년 4월부터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하여 운영되어왔습니다.

보수위원회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및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사유는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의거 하여 의사록을 작성·보존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구성

1) 총괄

보수위원회의 충실한 역할을 위해 당사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를 대표로 하고 위원 총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당사의 보수위원회는 총5인(조문기, 김영모, 박전규, 김세진, 김정학)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3인(조문기, 김세진, 김정학)의 위원이 사외이사이고 이 중 조문기 사외이사가 보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 중 조문기 사외이사는 한국은행 경남본부장 및 골드만삭스 상임고문을 역임하였

고, 김세진 사외이사는 한국펀드평가 대표이사,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한 재무·회계분야 전문가이며, 3인의 사외이사 전원은 당사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보수 관련 재무적 내용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측면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구성원 (기준일 : 2019.12.31.)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조문기	사외	위원장	2019.04.25	2020.04.26
김세진	사외	위원	2019.04.25	2020.04.26
박전규	상임	위원	2019.04.25	2021.05.01
김영모	상임	위원	2019.04.25	2020.01.02
김정학	사외	위원	2019.04.25	2020.10.25

다. 권한과 책임

1) 총괄

보수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라 당사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의 각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및 외부인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보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2)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에서 2019년도 임원의 기본연봉과 성과급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3)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019년 4월 25일부터 보수위원회가 운영되어 2019년 중 상기 내용에 관한 심의, 의결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 보수체계의 설계·운영 및 그 설계·운영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에서 2019년도 경영진 등의 보수체계에 대해 심의한 결과 보수체계를 적정하게 설계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5) 보수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사항 심의·의결

보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합니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합니다.

6) 금융회사의 보수체계와 재무상황 및 위험과의 연계성 및 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상시점검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에서 보수체계가 회사의 재무상황 및 리스크와의 연계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본 위원회를 통해 법규 준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7) 금융회사의 보수체계가 이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차보수평가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실시

보수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에서 연차보수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회사의 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등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8) 보수위원회 보수정책의 적용 범위

① 국내 : 회사 경영진 등에 적용
② 해외 : 해당사항 없음

9) 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변동보상 대상자의 결정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상임임원 및 비등기임원(준법감시인 제외)의 변동보상을 결정하며,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에서 2019년 임원 성과급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상기 임원·비등기임원 외 보수위원회에서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및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로 심의·의결한 임직원은 없습니다.

분류	인원수	직명
임원	8	상임임원 및 비등기임원
금융투자업무담당자	“해당사항 없음”	
기타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자		

10) 기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라. 보수위원회 활동내역 및 평가

1) 의사결정 절차

보수위원회는 위원장(사외이사 조문기)이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9년도에 소집절차가 생략된 경우는 없습니다.

회의일 통지 후 별도의 사전설명 절차를 통해 보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니다. 보수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019년의 경우 의결사항과 관련해서 별도의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2) 활동내역 개요

보수위원회는 2019년에 총 5회 개최 되었으며, 주요 의결안건으로 2018년 임원 성과급 지급, 임원 기본연봉 조정, 2019년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 및 특별성과급 지급 승인이 있습니다.

3) 회의 개최내역

가) 제2019년도 제1차 보수위원회 :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11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3월 2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조문기	김영모	박전규	김세진	김정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보수위원회 위원장 선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나) 2019년도 제2차 보수위원회 : 2019년 6월 25일(화) 오전 11시 1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6월 24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조문기	김영모	박전규	김세진	김정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2018년 임원 성과급 지급(단, 상근감사위원의 장기성과급 이연지급 여부는 추후 재논의함)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다) 2019년도 제3차 보수위원회 : 2019년 9월 30일(월) 오전 11시 4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9월 2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조문기	김영모	박전규	김세진	김정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2018년 임원 성과급 지급	찬성	찬성	-주)	찬성	찬성	가결

주) 위원 본인의 성과급 지급 안건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라) 2019년도 제4차 보수위원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30분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9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조문기	김영모	박전규	김세진	김정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사내이사 기본연봉 신설	찬성	찬성	-주)	찬성	찬성	가결

주) 위원 본인에 대한 안건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마) 2019년도 제5차 보수위원회 : 2019년 12월 30일(월) 오후 5시
〔안건 통지일 : 2019년 12월 27일〕

항목	위원별 활동내역					가결 여부
1. 위원 성명	조문기	김영모	박전규	김세진	김정학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참석	참석	참석	참석	참석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보고안건 없음					
4. 의결안건						

	제1호 : 임원 기본연봉 조정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가결
	제2호 : 2019년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 및 특별성과급 지급 승인	찬성	-주)	-주)	찬성	찬성	가결

주) 위원 본인과 관련된 안건 내용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4) 평가

보수위원회가 법령·내규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책임을 적정하게 수행하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수위원회가 회사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관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평가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9조(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에 의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는 평가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보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점검은 이사회가 주도하나 일부 세부적인 업무는 지원부서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 보수체계

가. 주요사항

1) 성과측정 및 성과와 보수의 연계방식

가) 회사 전체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당사는 매년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경영성과 협약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회사 전체 성과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지표로는 수익성 지표(자기자본순이익률), 성장성 지표(영업자산증가율), 시장성 지표(업계평균대비총자산이익률), 고유지표(고정이하 채권비율, 총채권 연체율 등)를

주요 성과측정 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재무 지표로는 경영관리 개선도,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에 대한 주요 성과측정 지표

상임임원 및 비등기임원의 경우 회사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점수 구간별 단계를 구분하여 평가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상근감사위원, 부사장, 준법감시인을 제외한 비등기임원(본부장)의 경우 당사 내부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본부의 계량점수 및 비계량점수 결과를 포함하여 성과 측정을 합니다.

준법감시인의 경우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회사 전체 및 개인 성과측정 결과와 개인 보수의 연계방법

임원의 경우 회사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 지표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개인 성과측정 지표로서 해당 본부의 내부경영평가 기준에 따른 계량점수 및 비계량점수 등을 통해 개인 성과보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성과보수 이연 및 조정, 환수, 지급확정 기준

가)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에 대한 정책

임원의 성과보수액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도에 성과보수(성과급)를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보수의 40%는 평가년도에 일시지급하고 60%는 평가년도 익년도부터 3년간 이연지급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연된 보수액 또는 지급된 보수액에 대한 조정정책

성과보수액 중 이연된 보수액은 3년간에 걸쳐 이연지급을 하며, 이연지급시에도 직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가 반영된 지급률을 재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당사 장기성과급 구조상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금액이 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

습니다. 아울러 허위·오류에 의한 경영실적 제출시 허위 작성에 대한 책임정도를 감안하여 성과급도 당초 결정된 수준보다 삭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이연보수액 중 지급확정과 지급미확정의 결정 기준

장기성과급은 기본급 인상율 변동 및 직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지급율 변동에 따라 연동되는 구조로서, 최종 운영기간이 종료되어야 이연 보수 최종 금액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3)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가) 전체 보수액 중 고정보수액과 변동보수액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보수 중 기본연봉은 고정보수액으로 분류하고, 평가 결과에 의해 지급되는 성과보수는 변동보수액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나) 성과보수의 지급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성과보수를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는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 성과보수액 중 현금과 주식 등 기타 보수간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출된 성과보수를 장기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할 수 있는 주식 및 주식연계상품 등이 존재하지 않아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라)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과 이연지급의 배분을 결정하는 기준 및 근거

임원의 성과보수액 중 즉시지급(단기성과급)과 이연지급(장기성과급)은 4 : 6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즉시지급은 평가년도에 성과보수액의 40%를 현금으로 일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3년 동안 매년 평가한 결과에 따른 지급율을 적용하여 이연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과보수 총액 등은 보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4) 일반직원의 보수체계

가) 성과주의 문화 정착을 위한 보수제도

당사는 내부적으로 경영실적 평가기준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외부적으로는 한국산업은행과의 경영성과 협약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성과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임금체계의 합리화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급여규정에 따라 기본연봉과 개인성과급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본연봉은 직무/역할의 가치 및 책임의 크기,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등급별로 임금범위를 달리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역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및 외부 인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의 경우 별도의 요청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6)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 내역

당사의 경우 보수 관련 보험의 활용내역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보수체계상 주요 변경 사항

보수위원회는 2019년 12월 30일 개최된 제5차 보수위원회에서 2019년도 임원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하여 심의하여 의결하였으며 이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보수 세부사항

1) 임직원 총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직원 보수총액(A)	법인세차감전순이익(B)		임직원수(C)	임직원 평균보수 (A/C)
			비율(A/B)		
전년도 (2018년)	241	1,579	15.3%	246	0.98
당해년도 (2019년)	264	2,089	12.6%	258	1.02

주1) 임직원보수총액(A)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주2) 법인세차감전순이익(B)은 t-1기의 금액을 기재한다.

[예시 : 당해년도가 2019년인 경우 2018년 말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기재]

2) 직급별 보수총액 및 성과보수액

(단위 : 명, 억원)

구분		임원		직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년도 (2018년)	보수총액	18	25.2	228	215.7
	성과보수액	11	11.2	212	47.0
당해년도 (2019년)	보수총액	15	23.8	243	240.5
	성과보수액	10	8.7	242	59.5

다.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 보수 세부사항

1)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주1)]	기본급[주2)]	성과보수액[주2)]	
					이연지급 대상
전년도 (2018년)	임원	13	12.7	11.2	3.2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2	13.5	8.7	3.0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주1) 임원(퇴직임원 포함, 사외이사 제외)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기재 (이하 동일)

주2) 보수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금원(수당, 실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함)을 모두 포함하며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되면 '기본급'으로 성과와 연관하여 지급되면 '성과보수'로 분류

2) 성과보수의 형태 (해당년도 발생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성과보수액				
			현금	주식[주1)]	주식연계상품[주2)]	기타[주3)]
전년도 (2018년)	임원	11.2	11.2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8.7	8.7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주1) 주식 : 발생 회계연도말 현재의 시가(종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가가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합리적 방법(예: 외부평가기관 2개 이상으로부터 평가받아 산정한 금액등)으로 평가하여 산정한다.

주2) 주식연계상품 : 상기 주1) 주식에 준하여 평가하고 산정한다. (발생년도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산정)

주1) 주2) 최종 지급의 형태가 현금이더라도 주식관련 보수인 경우 '주식' 또는 '주식연계상품'으로 기재

주3) 기타 : 상품권, 콘도이용권 등 현금 및 주식, 주식연계상품 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금원을 의미한다.

3)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지급확정	지급미확정
전년도 (2018년)	임원	9.3	3.2	6.1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1.4	3.0	8.3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1) 이연보수액 : 해당년도말 현재 누적된 총 이연보수액을 기재한다.
주2) 특정년도말 시점의 누적 이연보수액 중에서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지급규모가 확정된 경우 '지급확정'으로, 미확정된 경우 '지급미확정'으로 구분 기재
주3) 2019년 발생 성과보수액 중 미확정 이연보수액을 2019년말 기준 누적 이연보수액에 포함(이하 동일)

4) 이연보수액의 형태별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전년도 (2018년)	임원	9.3	9.3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1.4	11.4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5) 이연보수액의 보수의 구분 (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을 발생년도별로 구분)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t기	t-1기	t-2기	t-3기	이전
전년도 (2018년)	임원	9.3	2.9	3.0	2.2	1.3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11.4	5.3	2.9	2.0	1.2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	-	-

주) 해당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을 발생년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예시 : 2019년말 기준으로 누적된 이연보수액을 2019년(t기) 발생분, 2018년(t-1기) 발생분, 2017년(t-2기) 발생분 등으로 구분]

6) 이연보수의 조정

(단위 : 억원)

구분		이연보수액 축소액[주1]	직접적 조정[주2]	간접적 조정[주3]	직·간접적 조정에 노출된 금액[주4]
전년도 (2018년)	임원	-	-	-	6.1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	-	-	8.3
	금융투자 업무담당자	-	-	-	-

주1) 해당년 직전년도말 시점 누적 이연보수액중에서 직접적(삭감, 환수 등),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금액. 다만,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이연보수를 축소하였으나, 주가변동 등으로 인해 실제 이연보수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동 항목에 기재

주2) 이연보수가 직접적(삭감, 환수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3) 이연보수가 간접적(주가변동 등) 조정에 따라 축소된 부분을 기재

주4) 잠재적으로 직접적, 간접적 조정에 노출되어 있는 이연보수액(해당년도말 누적액 기준)

7)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수

(단위 : 명, 억원)

구분		수급자수	퇴직보수액	1인 기준 최고 지급액
전년도 (2018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당해년도 (2019년)	임원	-	-	-
	금융투자업무담당자	-	-	-

주) 임금과 법정퇴직금(근로기준법상)은 퇴직보수액에서 제외

<첨부 1.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산은캐피탈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라 한다)라 부른다. 영문명은 KDB CAPITAL CORPORATION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설, 설비, 기계, 기구, 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이하 "특정물건"이라 한다.)의 시설대여
2.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융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와 신기술투자조합의 설립 및 동 조합자금의 관리와 운용을 종합적으로 행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
3.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등의 신용카드업과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 직불카드의 발행 및 대금의 결제,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대금의 결제 등의 부대업무
   다만, 신용카드 회원은 부가가치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함.
4. 할부금융
5. 특정물건의 연불판매
6.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
7. 어음할인
8. 기업이 물품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의 양수, 관리 및 회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10.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가 보유한 채권 또는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입
11. 제2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외벤처캐피탈회사, 국외기관의 투자대행 및 해외투자 등의 국제업무
12. 지급보증
13. 기업구조조정 및 기업인수합병관련 업무(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업무 포함)
14. 부동산임대
1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취급이 허용되거나 별도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득한 업무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지점,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의 방법)

①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dbc.co.kr)에 게재한다.
②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2장 주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삼억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천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3천만주 범위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5%이상 15%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 당해 사업년도 이익에서 소정의 배당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에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적 제휴,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국내 금융기관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외국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기타 경영상 필요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상법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8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삭제)

제10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4(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2. 이사·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제1호와 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⑤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삭제)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제12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그 권리행사의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제3장 사채

제15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3,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보통주식은 2,500억원을 한도로 우선주식은 500억원을 한도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서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사채의 액면총액중 보통주식은 1,500억원을 한도로 우선주식은 500억원을 한도로 하고,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9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 및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그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식 일주에 대하여 일개로 한다.

제25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6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① 주주는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신탁을 인수한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②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려는 주주는 그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 및 주식의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삭제)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등

제31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제32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관련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총 재임기간은 6년미만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4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② 증원 또는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제33조의 임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임기를 결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대표이사 등)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대표이사 1인을 둔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임원서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써 사장, 부사장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개시 24시간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써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매년 선임한다.

④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⑤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9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기준 및 리스크관리기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위험관리기준을 말한다)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② 「상법」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행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제41조의2(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위험관리위원회를 말한다)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②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 의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0조 및 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의3(삭제)
제41조의4(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③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은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선임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

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1조의5(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6(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 퇴직금에 관한 회사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제43조(운영위원회)

① 이 회사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통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6장 비등기임원

제44조(비등기임원)

이 회사는 비등기임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 해임, 임기, 직무, 보수 및 퇴직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계산

제45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6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7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주주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제48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8조의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가 정하는 날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9조(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③ 미지급 배당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조(조례 및 규정) 본 회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기구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종전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비등기 상근임원은 본 정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2는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 2,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의 2,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7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8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199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1조의 4 제4항과 관련하여 현 상근감사는 임기만료시까지 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중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본다.

부칙(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1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기관 사전협의) 제2조 제3호의 단서를 개정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부칙(1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4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0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0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제45조에 의한 사업년도 변경 후 최초의 사업년도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33조 제1항은 이 정관 시행 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사외이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정관 시행이후 선임되는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이 정관 시행 전 재임한 기간에 대해서도 제33조를 적용한다.

부칙(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2. 지배구조내부규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주주와 투자자, 그밖의 금융소비자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 임원의 전문성 요건, 임원 성과평가 및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지켜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란 이사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2.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를 말한다.
3.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최고경영자”란 대표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역할과 지위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제정·변경 및 공시)
① 이 규범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변경한다. 다만, 법령 또는 주주총회·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단순히 반영하거나, 단순한 용어 변경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제정·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매년 이 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에 대한 지배구조연차보고서를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이 규범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령과 회사 내규를 준용한다.

제2장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한다.

제5조(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매년 선임한다.
②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이사의 자격요건)
① 사내이사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내이사가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② 사외이사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 등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외이사가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7조(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회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령, 정관 등 회사 내규에서 이사회의 권한으로 정한 것과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규정 및 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대주주·임원 등과 회사 간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회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 사항과 관련 법령 및 내규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④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이사의 권한과 책임)
①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의 보호, 회사 경영의 건전성 확보 및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② 이사는 관련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사의 선임 기준 및 절차)
① 이사(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외이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총 재임기간은 6년 미만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10조(이사의 퇴임 기준 및 절차)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임
3.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주주총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경우

제11조 (이사회의 소집 절차)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장이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

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3조 (이사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이사회의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이사회의 운영 및 사외이사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사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장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사회내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임원후보추천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리스크관리위원회
4. 보수위원회
5. 기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며,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이사회내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①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 추천 등에 관하여 결의한다.
②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④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16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은 사외이사로 한다.(1)
②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7조 (리스크관리위원회)
①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리스크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리스크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리스크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리스크관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의는 제1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 (보수위원회)
① 보수위원회는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에 대한 보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
② 보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③ 보수위원회의 결의는 제16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 등의 평가)
① 회사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보고한 활동내역을 기초로 매년 이사회내 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지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사회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사회내 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지표 등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제1항의 결과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에 참고하며, 평가와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장 임원에 관한 사항

제20조 (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은 제6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격요건을 준용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③ 리스크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여야 하며, 리스크관리책임자가 된 이후에 관련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

제21조 (임원의 권한과 책임)(1)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내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③ 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를 포함한다)는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회사에 대해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가 아닌 임원은 직무에 따른 권한과 전결권을 가지고, 소속 직원을 지휘·관리하며 해당 직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22조 (임원의 선임 기준 및 절차)
① 이사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규범 제9조를 따른다.
② 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책임자 및 지배구조법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그 밖에 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 등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3조 (임원의 퇴임 기준 및 절차)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임한다.
1. 임기의 만료
2. 사임
3.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한 경우. 단,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임원의 유고시에는 미리 지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임원 및 임원 후보자에 대한 교육제도)
① 회사는 신임 임원(그 후보자들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회사의 현황, 전략, 금융, 재무, 리스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보고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중에서 선임된 경우
2. 다른 회사의 재직 경력 등으로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회사는 사외이사를 위한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임원은 경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사 내부 또는 외부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의 평가결과를 임원 선임 및 연임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및 보수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임원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보수 및 지급방식에 대한 결정은 보수위원회 또는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최고경영자의 자격 등 경영승계에 관한 사항

제26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원칙)
①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절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이사회는 최고경영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한다.
③ 최고경영자의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 (최고경영자의 경영승계 지원)
회사의 이사회 주관 부서는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제28조 (최고경영자의 자격)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29조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
① 최고경영자 후보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며, 사내,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참조 할 수 있다.
② 최고경영자 후보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제30조 (최고경영자 추천 관련 공시)
회사는 최고경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공시사실 및 공시 확인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1.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절차 개요
2.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약력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후보 제안자 및 후보자와의 관계
4. 관련 법령등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근거
5.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 이유
6. 최고경영자 후보자의 경력
7. 그밖에 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1조 (책임경영체제 확립)
① 회사의 최고경영자의 임기는 정관 및 관련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최고경영자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거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는 등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며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 중 일부를 최고경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기준 및 절차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임 및 퇴임사유는 제10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내규의 적용) 이 규범 제14조 제1항의 이사회내 위원회의 직제 반영은 직제규정 제4조 제7항을 적용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범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위원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3. 이사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사회의장 및 선임사외이사)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이사회에서 매년 선임한다.(12)
② 의장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12)
③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의장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11)(12)
④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1)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 소집 및 주재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⑤ 임직원은 선임사외이사가 제4항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11)

제3조(소집)
① 이사회의 소집은 의장이 한다.(1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이사에게 심의안건을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결의사항)(12)
① 이사회는 정관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4호중 외규의 변경에 따른 자동적 변경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1)(2)(3)
(6)(7)(8)(9)(10)(11)(12)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
2.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항
3. 자본금의 변경(적립금의 자본전입 포함)
4. 다음의 중요규정 제정 및 변경
   가. 이사회 규정

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라.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마.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바. 운영위원회 규정
사. 비등기임원규정
아. 내부통제규정
자. 리스크관리규정
차. 내부회계관리규정
카. 직제규정
타. 취업규칙
파. 급여규정
하. 복지규정
거. 퇴직금규정
너. 자금세탁방지규정
더. 예산규정
러. 회계규정
머. 윤리행동강령

5. 자회사의 신설, 폐쇄 및 매각과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6.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에 의한다)
7. 준법감시인의 선임 및 해임
8. 리스크관리책임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위험관리책임자를 말한다)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한 재결의(단,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은 제외한다)
10. 기타 대표이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이사회내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정한다.(12)

③ 이사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일부를 이사회내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12)

제5조(결의방법)(12)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준법감시인 및 리스크관리책임자의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여야 한다.(11)(12)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다.(12)

제6조(의사록)
① 이사회업무 소관실장은 의사록의 작성·보관 등 이사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4)(5)
②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은 후 보존한다.

제7조(관계인 의견청취)(1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안건 업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4.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 주관 부서장이 담당하며, 관련 사무는 기획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조(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결의사항)
위원회는 임원(대표이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에 한정한다.) 후보 추천 등에 관하여 결의한다.

제5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는 위원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6조(후보 추천 절차)
① 위원회는 회사 및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다.

제7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및 외부인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차회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 주관 부서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내규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첨부 5.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및 이사회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3조(역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4)(5)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평가, 사후조치, 개선방안 제시
2. 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제시
3.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감사인을 말함. 이하 같음) 선정(8)
4.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5. 내부·외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6. 관계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7. 기타 감독기관의 의뢰, 사장, 위원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제4조(권한)

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5)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
2. 확인서, 의견서, 답변서 등의 제출요구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4.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5. 회사 거래처에 대한 자료 징구
6. 자회사(회사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금융자회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대한 감사업무에 수반되는 권한
7.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제5조(의무)

위원회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는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3.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

여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감사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기록과 입증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독립의 원칙)

위원회는 그 직무를 이사회, 집행기관, 타실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4)

제7조(보고)

①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이상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경영진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및 감독당국에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선임 및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전원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9)

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법령 및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7)

제9조(감사위원의 자격요건)

위원 중 1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6)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재무 또는 회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분야의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국가, 지방차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 또는 같은 법 제9조제17항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융투자 관계 단체는 제외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0조(해임 및 충원)

① 위원의 해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7)

② 위원회의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관계법령 및 정관의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7)

제11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명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5)

제12조(보조조직)

① 회사의 모든 내부감사기구는 위원회의 소속 하에 둔다.

② 위원회의 직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검사실을 둔다.(5)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검사실장이 한다.(4)

제14조(권한위임)(9)

① 감사위원의 출장, 기타 사유로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고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장의 지휘·감독 하에 검사실장이 이를 대행하고, 위원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15조(삭제)(9)

제16조(소집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9)

②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와 안건을 회의개최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7)

③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토의를 요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9)

④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5)(9)

제17조(의안심의)

① 감사위원회는 검사실장이 의안을 낭독한 후 질문과 토론을 하며 각 위원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4)

② 위원장은 질문과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제18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 (삭제)(6)
③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가 제한되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4)(5)(6)

1. 결의사항
   가.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나.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
      2) 회계 관련 감사보고서(상법에 규정된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임시이사회 소집청구
      6)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다. 감사에 관한 사항
      1)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2) 정직이상에 해당하는 징계 및 중대한 변상사항(내부 감사 결과)
      3) 검사실장의 임면에 대한 동의
      4)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대한 승인
      5) (삭제)
      6) (삭제)
      7) 내부·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연 1회)
   라. 기타
      1) 감사위원회직무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심의사항

가. 감사에 관한 사항

1)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2)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3)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4) 준법감시인의 해임 건의
5)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6)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7)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8)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9) 외부감독기관 또는 모회사의 감사결과 조치요구(8)
10)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대한 사실
11)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1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8)
13) 내부감시장치의 가동현황에 대한 평가(8)

나. 기타

1)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관계인의 출석)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회계관련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관련자료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5)

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중요한 의결사항은 각 이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차회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9)

제22조(감사업무의 위임)(9)

①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실장에게 위임하며, 검사실장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5)(6)(9)

1. 위원회가 정한 내부감사계획의 세부계획변경
2. 내부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등 내부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3. 제4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권한

4. 감봉이하에 해당하는 징계 및 개인별 일천만원 이하의 변상사항(내부 감사 결과)

5. 일상감사

6. 회계 관련 외부감사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처리

7. 내부·외부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부서장 앞 조치 요구 및 확인

8. 감사관련 대외보고

9.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10.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검사실에 관한 사항은 감사위원회직무규정에서 따로 정한다.(5)

제23조(위원회에 대한 보고)

검사실장은 제22조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이외에 중요 업무 수행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9)

제24조(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보고서의 작성)

①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②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6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27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관례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전면개정)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위원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시행한다.

<첨부 6.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 의한 리스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리스크관리 주관 부서장이 담당하며, 관련사무는 리스크관리 주관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3조(소집)
① 위원회는 매분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2인 이상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리스크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 리스크관리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부담가능한 리스크수준의 결정
3. 적정 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5.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수립 및 위기대응 상황 점검
6. 리스크관리 관련 세칙의 제·개정

제5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워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계인의 출석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및 외부인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처리)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차회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 주관 부서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한다.

제8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7. 보수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련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보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① 위원회는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제5조에서 정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총수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사외이사인 위원 중에서 위원회 결의로 선정한다.
③ 위원장이 유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외이사인 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선임일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보수 주관 부서장이 담당하며, 관련 사무는 보수 주관부서에서 담당한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24시간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결의사항)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임직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
2. 보수지급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

제6조(결의방법)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결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출석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계인의 출석)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및 외부 인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처리)
①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차회 이사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업무 주관 부서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사록에는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보존한다.

제9조(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